

『구미시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』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2. 제안이유

- 「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」 제73조에 따른 구미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제정으로 「구미시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」를 폐지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「구미시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」 폐지

4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해당사항 없음
- 예산조치 : 별도 조치 필요 없음
- 합 의 : 기획예산담당관, 감사담당관과 합의되었음
- 기 타 : 해당사항 없음

5. 검토의견

○ 본 폐지조례안은

- 상위법령인 「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」에 따라 「구미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」을 제정하고 본 조례안을 폐지하고자 하는 안임.

○ 검토 결과,

-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위임한 근거 조항이 상위법 개정에 따라 삭제되었으며, 당시 사용되는 “사전재해영향성검토”가 현재 “재해영향평가”로 변경되는 등 2006년 조례 제정 이후 오랜 시간 조례 개정이 없어 현재의 상위법령과 맞지 않아 본 조례 내용을 규칙으로 제정하여 운영하고 조례를 폐지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됨.